

「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8년 11월 16일, 이주용 의원 발의
- 회부일자 : 2018년 11월 26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42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18년 11월 27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이주용 의원)

가. 제안이유

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
-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책무에 관해 정함. (안 제4조)
-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. (안 제5조 및 안 제6조)
- 사회복지사 등의 지속적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지원에 관해 정함. (안 제7조)
- 사회복지사 등이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신분보장 등에 관해 정함. (안 제8조)
-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음. (안 제9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최순철)

- 본 조례안은 관내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
- 조례안의 형식은, 본칙 10조 및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
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
안 제4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책무
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
안 제7조에서는 지속적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지원에 대해
안 제8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
안 제9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 등에 대하여 각각 정하였으며,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습니다.
- 평창군의회 입법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받았으며,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

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및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에 따라 평창군 지역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,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사회복지사 등”이란 평창군 소재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등(이하 “사회복지기관”이라 한다)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.

제4조(책무 등) 평창군수(이하“군수”라 한다)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1. 필요한 시책의 마련과 적극 추진
2. 직무수행 과정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 직무환경의 조성
3. 제1호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

제5조(지원계획) ① 군수는 제6조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는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지원목표와 방향
2.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추진계획
3. 구체적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방안
4. 근무환경 개선 세부계획
5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각종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마다 10월말까지 지원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·보완해야 한다.

제6조(실태조사) ①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, 보수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를 해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7조(사업지원)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지속적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개선
2. 조사 및 연구
3.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
4. 신분보장을 위하여 적절한 지원체계 마련
5. 보수수준 향상, 장기근속자의 선진지 시찰 등 사기진작
6. 휴식과 직무능력 회복

7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군수가 제1항제1호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각종 사고에 대한 신변보호 장비의 구입
2. 위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 체계 구축
3. 근무 중 발생하는 각종사고에 대한 상해보험의 가입
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업무를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의 신청·교부·정산 등과 업무위탁의 절차·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,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에 따른다.

제8조(신분보장 등)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·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할 경우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그 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.

제9조(표창)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시설, 개인 등에 대하여 「평창군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